

중소기업 focus

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지원 제도(2)

-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투자촉진지원제도 -

발간주제

- 33호 : 중소기업범위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
- 34호 :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투자촉진지원제도
- 35호 :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제도와 중소기업 기업상속지원제도

1

하나.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

경영안정 지원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● 접대비의 손금산입 ●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(소득)세 감면
-----------	---

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

-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·업종·규모에 따라 5~30% 법인(소득)세 세액감면

● 지원내용(감면율)

-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
-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14. 12. 31.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감면비율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적용

구분		감면율	
		도·소매업, 의료업	그 외 업종
소기업	수도권	10%	20%
	수도권 외		30%
중기업	수도권	5%	지식기반산업 10%
	수도권 외	화학원료·제품제조업	15%

- ☞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며, 수도권에 있는 본점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도권외의 법인에 해당
- ☞ 종업원수가 제조업 100명 미만, 작물재배업·어업·축산업·광업·건설업·출판업·물류산업·여객운송업 50명 미만, 그 외의 업종은 10명 미만이고,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
- ☞ 수도권 :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
- ☞ 지식기반산업 : 엔지니어링사업, 전기통신업, 연구개발업, 컴퓨터프로그래밍업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,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, 전문디자인업, 오디오물출판 및 원판녹음업, 광고업 중 광고물작성업,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, 방송업, 보서서비스업, 서적·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,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(지역예술가 제외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제조업등(42개업종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산출세액 5~30% 감면 ● 적용기한 : '14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적용대상에 영화관운영업, 주택임대관리업,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가 ● 적용기한 : '17. 12. 31.
--	---
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다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,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타 공제와 중복공제가 안되며, 단,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,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중복적용 가능
- **지원적용 업종**

제조업, 도·소매업, 건설업, 여객운송업, 자동차정비업, 의료업(의원·치과의원 및 한의원제외), 광업, 어업, 선박관리업, 축산업, 작물재배업, 컴퓨터프로그래밍업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, 전기통신업, 정보서비스업, 방송업, 광고업, 출판업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, 포장 및 충전업, 전문디자인업,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,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,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, 연구개발업, 과학기술 서비스업, 엔지니어링사업, 수탁생산업, 물류산업, 직업기술분야학원업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, 노인복지시설운영업,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,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, 관광사업(카지노,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제외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, 전시산업, 하수·폐기물처리업,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, 영상·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(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), 사회복지서비스업, 무형재산권임대업, 연구개발지원업,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, 사회교육시설, 직원훈련기관,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, 도서관·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(독서실운영업제외), 신·재생에너지발전사업, 주택임대관리업

■ 접대비의 손금산입

-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
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16년 12월 31일까지 접대비 한도를 우대(1,800만원 → 2,400만원)하여 각사업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●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
-------------	--

● 접대비의 기준

- **(접대비)** 접대비·교제비·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·매입처·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·향응·위안·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
- **(문화접대비)**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이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%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

문화접대비 :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, 영화, 스포츠 관람,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%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, 중소기업의 문화경영과 문화접대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
-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·이용권의 구입
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·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절한 가격으로 기재되어있는 입장권의 구입
-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입장권 구입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

● 접대비의 한도

-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,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면 접대비 한도는 1,200만원으로 적용됨

중소기업	대기업
2,400만원	1,200만원
수입금액	적용률
100억원 이하	1만분의 20 (0.2%)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2천만원 +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
500억원 초과	6천만원 +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

■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(소득)세 감면

-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50~100% 감면
 -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50% 감면

사회적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●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

2.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제도

투자촉진 지원	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하는 기업
----------------	---

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

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%(4%)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
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:
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,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고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하여 적용

지원 대상	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)한 중소기업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상장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(운휴중인 것 제외)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신규상장 중견기업 :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에 부합하는 기업
------------------	---

☞ 사업용 자산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투자금액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(중고품 제외)의 3%(4%) 세액공제

● 지원내용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투자금액의 3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 세액공제 ●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금액의 4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 세액공제

■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
-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%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
·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시설에 투자(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)하는 내국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조업, 물류산업, 우수체인사업자,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통합리화시설 ②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③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④ 「광산보안법」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⑤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⑥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·처리·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 ⑦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⑧ 「해외자원개발사업법」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·채광설비 등의 설비 ⑨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 (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)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

● 지원내용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투자금액의 7%(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금액의 10%)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반기업의 경우 3% 세액공제 * 중견기업(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에 부합하는 기업)의 경우 5% 세액공제
--

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

-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기본 3% 와 추가세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
● 지원내용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본공제금액 : 투자금액 × 3% (중소기업의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견기업이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: 투자금액 × 1%,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% ·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에 부합하는 기업 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3">추가공제금액</th> </tr> <tr> <th>구분</th> <th>중소기업 및 중견기업</th> <th>일반기업</th> </tr> <tr> <td>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 수도권내에 투자</td> <td>투자금액의 4%</td> <td>투자금액의 3%</td> </tr> <tr> <td>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</td> <td>투자금액의 5%</td> <td>투자금액의 4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농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사업 : 투자금액의 1% 가산</td> </tr> </table>	추가공제금액			구분	중소기업 및 중견기업	일반기업	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 수도권내에 투자	투자금액의 4%	투자금액의 3%	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	투자금액의 5%	투자금액의 4%	농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사업 : 투자금액의 1% 가산		
추가공제금액															
구분	중소기업 및 중견기업	일반기업													
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 수도권내에 투자	투자금액의 4%	투자금액의 3%													
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	투자금액의 5%	투자금액의 4%													
농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사업 : 투자금액의 1% 가산															

☞ 세액공제 후 2년간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

♣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(발간책자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
 발행인 윤종일
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
 광교로 107
 홈페이지 www.gsbc.or.kr
 자료문의 평가조사실
 031-259-7365

「중소기업 포커스」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,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